

검 토 보 고 서

| 안 건 명 | 부서명 | 페이지 |
|------------------------------|------|-----|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무1과 | 1 |

(2014. 4. 1)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진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4년 3월 21일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4년 3월 25일

4.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및 제34조(세율)

5. 개정이유

-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에 반영

6.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인상(안 제5조, 제7조)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0조 및 제12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7. 검토결과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1992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를 현재의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등 외부환경을 반영, 세율을 현실화하여 등록면허세의 조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조를 근거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00% 인상하고(안 제5조), 「지방세법」 제34조를 근거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각 종별 50% 일괄 인상하였으며(안 제7조),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변경하고(안 제10조), 「지방세법」 제115조를 근거로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산출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영(안 제12조)하는 등
-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정비하고,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세법]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전당 6천원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

| 구분 | 인구 50만 명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
|-----|---------------|---------|---------|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27. , 2013.1.1.>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